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5. 9. 30	조례	제2109호
일부개정	2016. 9. 26	조례	제2195호(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7. 6. 20	조례	제2264호(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9. 8. 2	조례	제2508호(조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21. 9. 28	조례	제2782호
일부개정	2023. 12. 28	조례	제3077호
일부개정	2024. 12. 23	조례	제320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사이클 활성화를 통해 탄소중립 도시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사이클(upcycle)”이란 「광명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업사이클(재활용)을 말한다.
2. “업사이클아트센터(Upcycle Art Center)”란 폐자원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디자인 등을 더해 새로운 용도 또는 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재탄생시키고, 업사이클 문화 확산 및 산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술 공간 및 부속시설을 말한다.
3. “업사이클 연관 산업”이란 업사이클 산업과 연관 및 동반 상승효과가 큰 산업으로, 에코디자인(eco-design) 산업 및 에코콘텐츠(eco-content) 산업을 말한다.
4. “에코디자인(eco-design)”이란 업사이클의 상위 개념으로, 생산·유통·사용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환경 부하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설계·디자인하는 것을 말한다.
5. “에코콘텐츠(eco-content)”란 자연환경보전을 소재로 만든 창작물로, 제작 과정에서도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한 친환경 문화콘텐츠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제3조(명칭) 시설의 명칭은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로 한다. <개정 2023. 12. 28>

[제목개정 2023. 12. 28]

제4조(기능)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및 부속시설(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8>

1. 센터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작가 및 업사이클 관련 공간 운영 및 관리
3. 재활용품 등을 활용한 상품 개발·판매 및 홍보
4. 센터 관리 및 운영
5. 센터 내·외의 장소 등에 설치되어 있는 전시물 등에 대한 관리
6. 업사이클 및 연관 산업(에코디자인 및 에코콘텐츠)의 육성 및 창업기업 지원
7. 업사이클 및 연관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공모 사업 등 특화 사업의 운영
8. 업사이클 문화 확산 및 지역사회 연계
9. 그 밖에 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제2장 운영관리

제5조(운영) 센터는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하며 필요한 조직,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 6. 20, 단서삭제 2023. 12. 28>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센터는 다음 각 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상시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1. 매주 월요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는 그 다음 날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
3. 시설 점검이나 보수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홈페이지나 사용자 등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공익 목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의 휴관일에도 예외적으로 센터를 개관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8>

제7조(프로그램의 운영) ① 센터에서는 센터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자, 다양한 전시·공연·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에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수강료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재료비는 수강생이 별도로 부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종류와 수강료 등은 센터 홈페이지 등에 사전 게시하여야 하며, 수강료 등의 징수 및 반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12. 28>

제8조(수강신청) 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센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강사 및 강사료) ① 센터에서는 센터의 운영프로그램을 담당할 우수강사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강사료의 지급기준은 강사수준, 강좌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제3장 관람 및 시설의 이용

제10조(관람·이용시간) 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나 사용자 등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12. 28>

제11조(관람료) ① 센터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1. 센터에서 전시물 등을 유료로 대여 받아 기획전시하거나 순회 전시하는 경우
2. 제13조에 따라 센터시설의 대관허가를 받아 전시 등을 하는 자가 전시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관람료는 시장이 정하여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관람료는 전시 등을 하는 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관람료는 광명시민에 한해 50퍼센트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무료관람 등)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서 센터에서 전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9. 26, 2019. 8. 2, 2021. 9. 28, 2023. 12. 28>

1. 국민·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보훈 관계 법령 등에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규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4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한 경우, 일반 관람객에게도 무료관람을 실시하거나, 시설이용자로 하여금 무료관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사용허가) 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② 센터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철회)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23. 12. 28, 2024. 12. 23>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센터 사용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철회) 승낙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2024. 12. 23>

제14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 사용허가를 하지 않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1.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센터의 설립 목적 및 기능에 부합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신청서에 거짓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5. 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6.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 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특정 종교의 포교, 의료 행위, 상업적 행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8. 동일한 단체 또는 행사가 1회 이상 연속적(장기 및 정기)으로 대관하는 경우
9. 그 밖에 공익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설 2023. 12. 28〉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1항제1호, 제4호, 제7호에 따라 사용허가의 제한 또는 취소를 받은 자에 대해서 다음 1년간 사용 신청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8〉

[제목개정 2023. 12. 28]

제15조(사용허가 순서) 센터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허가 신청 접수순으로 한다. 단, 신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대로 허가한다. 〈단서신설 2023. 12. 28〉

1. 센터가 직접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3. 보조사업자 등 센터의 지원사업 참여자(단체)가 주관하는 업사이클, 자원순환, 환경 관련 행사
4. 업사이클, 자원순환, 환경 관련 행사
5. 교육청, 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육 행사 및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7.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명이 참여하는 비영리 행사

제16조(사용료) ① 센터시설의 사용자에게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징수 및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사정으로 사용 등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 등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 등이 본인의 의사로 시설이용을 취소한 경우

제17조(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

정 2019. 8. 2, 2021. 9. 28, 2023. 12. 28, 2024. 12. 23>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 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그 가족
 3. 보훈 관계 법령 등에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규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단, 국가가 지정한 보훈 단체에 한한다)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구성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 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사용료의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수강 신청 시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2024. 12. 23>

[제목개정 2024. 12. 23]

제18조(시설의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9조(변상) 사용자 또는 관람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1. 시설물 및 전시물을 파손하였을 경우
2. 그 밖에 시설물 및 전시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9. 26 조례 제2195호,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 20 조례 제2264호,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광명시시설관리공단”을 “광명도시공사”로 한다.

⑨ 생략

부칙 <2019. 8. 2 조례 제2508호, 조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은 2019. 7. 1.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 9. 28 조례 제2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8 조례 제30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12. 23 조례 제3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업사이클아트센터 수강료 등의 징수 및 반환기준

1. 프로그램 수강료 등 징수기준

구 분	기 준	수강료	비 고
정기강좌	1인/1개월	40,000원 이내	
체험활동	1인/1회/1종	10,000원 이내	

2. 수강료 반환기준

구 분	환불사유(환불 신청일)	환불기준	비고	
프로그램 수강료	운영자 귀책사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100퍼센트		
	수강자 귀책 사유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강 게시 전날까지	100퍼센트	
		수강기간의 1/3 경과 전 (잔여일수 20일 이상인 경우)	70퍼센트	
		수강기간의 1/2 경과 전 (잔여일수 15일 이상인 경우)	50퍼센트	
		수강기간 1/2 경과 후 (잔여일수 15일 미만인 경우)	환불하지 아니함	
수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강 게시 전날까지	100퍼센트		
	수강 게시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		

[별표 2] <개정 2024. 12. 23>

업사이클아트센터 시설 사용료 징수 및 반환기준

1. 시설 사용료

(단위: 원)

구분		기준	금액
전시장, 공유주방, 공연장		1회(2시간)	30,000
그 외 시설	면적 기준 50㎡ 미만	1회(2시간)	10,000
	면적 기준 50㎡ 이상	1회(2시간)	20,000

※ 1시간 이상 초과 시 매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 휴일은 기준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2. 냉·난방 사용료

(단위: 원)

구분	기준	금액
전시장, 공유주방, 공연장	1회(2시간)	30,000
그 외 시설	1회(2시간)	15,000

※ 사용자의 선택 신청 시 부과

※ 매시간 초과 시 30% 가산

3. 사용료 반환 기준

구분	이용 요금	반환 금액
시설 사용료	사용일 7일 전	이미 납부한 사용료 전액
	사용일 전일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1/2 해당액
	사용일 당일	반환하지 아니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2. 23>

업사이클아트센터 사용(변경·철회) 신청서

신 청 인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연락처	유선번호		휴대전화	
FAX			e-mail		
대 관 신	사용목적				
	행사제목				
	사용인원				
사 용 기 간	사용기간	대관시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행사시간	년 월 일 시 분		
사 용 시 설	시 설 명				
	부대시설	<input type="checkbox"/> 냉·난방 <input type="checkbox"/> 음향 <input type="checkbox"/> 조명 <input type="checkbox"/> 빔프로젝터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 용 하 는 항 목	면제대상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면제사유	업사이클아트센터 조례 제17조①항	
	사용료	일금 원정(\)			
	첨부서류	행사 주요 내용(행사계획서) 첨부 필수			
변경(철회)사유 ※ 변경(철회)의 경우 기재					
위와 같이 업사이클아트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사용(변경·철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광명시장 귀하					

업사이클아트센터 사용(변경·철회) 승낙서					
성명 (단체명)			사용료		
사용기간	20 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시간)				
사용시설			장소		
허가조건	이면과 같음				
위와 같이 사용(변경·철회)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장					

(앞)

허 가 조 건

1.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그 밖의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종교성, 정치성, 상업성(상품 홍보 및 판매) 목적의 행사는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대관중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3. 업사이클아트센터는 “금연건물”이므로 담배를 피우지 못하며, 모든 대관 공간에서 음주 및 음식물 섭취는 불가합니다.
4. 예약시간에 준비 및 정리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시간을 준수하여 이용해야 합니다.
5. 대관 기간 중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참여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6. 업사이클아트센터 시설 장비 또는 집기 등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7. 홍보물 등을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8. 이용자가 설치하였거나 부착한 각종 시설물과 홍보물 등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 및 제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영자가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9. 대관 시 발생된 쓰레기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이용자가 직접 수거·처리하여야 하며, 소등 및 냉난방기 전원 확인 후 퇴실하여야 합니다.

(뒤)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4. 12. 23>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4. 12. 23>